“헬기사격 알고도 허위 주장…명예훼손 고의성 있었다”

재판부 유죄 선고 판단 배경

“진술·탄흔감정…헬기사격 확인 ”

실형 선고, 양형재량 한계 벗어나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씨 1심 판결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명예 훼손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전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헬기 사격 있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헬기 사격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헬기에서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은 일관되며, 주변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1980년 5월 21일 광주시내에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선 14명과 진술조서를 통해 진술한 2명의 진술, 당시 계엄군의 진술, 군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500MD헬기에서 위협사격 이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예비적으로 국립과학연구원 탄흔 감정결과와 증인 4명의 진술, 당시 계엄군의 엄호사격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들어 5월 27일 UH-1H헬기에서 전일빌딩에 대한 M60사격이 행해졌음을 인정했다.

◇**헬기사격 충분히 인식**=전씨는 자신의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 겸 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사의 정식 지휘계통에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가능 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왜 집행유예인가**=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출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점도 형량에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며, 역사적 의미는 양형에 있어서는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로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었다는 언급도 없어 이를 염두에 두고 양형에 반영하는 것도 책임주의 및 양형 원칙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만 89세의 전씨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벌금 납부의 강제수단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추징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효적인 처벌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택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자위권 발동 주장 무색”**=전씨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현재까지도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계엄군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가 격화되어 부득이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동원했다는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해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에 의한 사격을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지난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전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특별법 개정안·왜곡처벌법, 이슈법안에 밀려 국회서 제자리

법원이 지난 30일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왜곡처벌법 등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 등 이슈 법안에 밀려 대부분 5월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 강화·설훈 의원 대표발의) 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 국방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상임위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법 처리 등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공법 단체화)는 오는 2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과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에 대한 보훈보상 제외)도 각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대부분 법안이 발목이 잡혀있고, 예산 처리와 공수처법 대립 등으로 5월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함·골프·초호화 오찬회동…전씨, 18차례 재판 중 3차례만 출석

회고록 출간부터 1심까지…3년 7개월 일지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5·18 헬기 사격의 존재를 인정한 첫 법원 판단으로, 전씨는 23년 만에 다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8년 5월 3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한 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로부터 같은 달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여만인 지난 2018년 1월, 회고록 집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해 5월 재판에 넘겼다.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추진됐지만 전씨가 불응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 재판은 2년 6개월 동안 18차례 진행됐다. 검찰측은 28명, 전씨측은 8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다. 검찰측은 학생·간호사·성직자와 국방부 특조위 관계자 등을 불러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부대에 근무하며 보고들은 정황, 특조위 조사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고 전씨 측은 계엄군 지휘관과 광주에 투입됐던 육군 항공대 조종사 등을 불렀다.

전씨는 선고일까지 포함해 3차례만 재판에 참석했고 나머진 불출석했다. 특히 불출석 과정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치는 모습과 12·12 가담자들과 함께 한 오찬 회동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은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전씨측은 고령·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고 기각된 뒤에도 다시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가 하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미루기도 했다. 법원 인사로 재판장도 두 차례 바뀌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재판일지

일시	내용
2017	
4월3일	전두환 회고록 출간
27일	조비오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6월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28일	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
8월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12월7일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신청
2018	
2월	전두환,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은
3월	전두환,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은
3월8일	광주지방법원 전두환 민사재판 첫 공판
5월3일	광주지방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불구속기소
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15일	전두환회고록 수정본 가처분 인용
28일	전두환 형사재판 1차 연기
7월11일	전두환 형사재판 광주지방법원 공판준비기일
16일	전두환 형사재판 2차 연기
8월27일	전씨 건강(알프하이머 등) 이유로 불출석, 전두환 형사재판 3차 연기
9월13일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광주지방법원 소송 원고 일부 승소 5.18기념재단 , 5월3단체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 1000만원 등 7000만원
21일	전두환 형사재판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전 신청
10월1일	전두환 형사재판 4차 연기
2일	전두환 형사재판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전 신청기각 결정
4일	전두환회고록 손해배상 광주고등법원 항소
11월30일	전두환 형사재판 대법원 관할이전 기각
2019	
1월7일	전씨 건강(독감 등)이류로 불출석, 전두환 형사재판 5차 연기, 구인장 발부
2월25일	법원정기 인사로 재판장 변경
3월11일	인정심문 위해 전두환 형사재판 첫 참석
5월 8일	전두환 불출석 허가
2020년	
2월18일	새 재판장 배정
4월 27일	인정심문 위해 전두환 형사재판 전두환 두 번째 참석
5월25일	전씨 불출석 허가
10월5일	전두환 18차공판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30일	전두환 형사재판 1심 선고기일

조비오 신부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